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6. 7. 19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7월 9일

○ 회부일자 : 1996년 7월 9일

3. 제 안 이 유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의 모법인 환경보전법이 '90. 8. 1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 '92. 7. 1일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개편되었으며 '95. 7. 1일 부지사가 행정, 정무부지사로 복수화 개편되었음에 따라 동조례 규정중 설치근거법과 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제1조 (목적)

"환경보전법 제11조"을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로

○ 제3조 제2항 (구성)

위원장은 "부지사"를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 제8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을 →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

5. 검토 보고

충청북도 환경보전지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지문위원회 운영 근거법 변경('90. 8. 1) 및 도 직제 개편('92.7.1)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95. 8.11)에 따라 관계법령 변경과, 위원장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충청북도 직제규칙이 각각 '90. 8. 1일, '92. 7. 1일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의 개정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체됨으로서, 그간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